

##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方向(제 4 회)

大韓齒科醫師協會 淨化推進委員會

### 社會淨化運動의 理念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 민족이 훌륭한 美德과 價値를 민족정신의 진수로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가 國民精神의 새신을 부르짖어야 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정치사회적인 개혁을 계기로 하여 汎國民的 精神革命運動을 전개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까이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멀리는 외세와의 鬭爭으로 점철된 국난극복의 풍파를 겪는 가운데 그동안 지나왔던 價値觀과 規範秩序가 굴절되고 침식되고 약화되었으나 그것을 대치하여 우리 사회를 지탱할 規範體系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혼미를 거듭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범질서의 樹立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새 歷史의 章을 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民族精神系統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게 再創造하여 정신풍토를 진전하게 振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사회란 넓은 의미에서 경기장이라 볼 수 있다.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기란 스포츠가 아니며 觀衆에게는 불쾌감을, 그리고 경기자에게는 부상만을 안겨주는 난장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規範이 약화될 때에는 萬人の 萬人에 대한 투기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精神規範·價値觀의 정립은 절실한 것이다.

새로운 精神規範·價値觀의 定立은 口號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염원하고, 正義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로 새 社會建設에 매진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모든 精神規範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확립된다. 행하지 않는 규범은 쓸모없는 것이다. 행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은 우리 生活속에 자리잡게

되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定立되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받침대가 되는 것이다. 規範이 죽은 言語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生活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참다운 發展을 기약하는 文化가 피어날 수 있는 土壤이 형성될 수 있다.

진정한 민족적 발전에 필수적인 건전한 文化의 함양이라는 긴 안목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倫理와 規範體系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끊임없는 努力이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自己變革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새로운 精神規範은 우리생활의 一部가 되고, 나아가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고 잘 사는 새 社會建設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밝은 正義社會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自己反省과 自己革命을 해야 하며 사회정화운동의 참 뜻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規範體系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價値體系에서 얻은 遺産과 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價値基準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 요청에 부응도록 定立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적 전통과 시대적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正直, 秩序, 創造를 새로운 규범체계의 핵심개념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사회정화운동의 理念的 지표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정직이 바탕을 이루는 신뢰할 수 있는 社會이며, 그 社會生活은 秩序를 통해 調和를 이루고, 創造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進歩하는 社會인 것이다.

#### 1. 正 直

價値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바탕위에 서서 지금까지의 混亂되고 誤導된 의식구조의 개혁에 임하자는

것이다. 올바른 가치관 위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행위와 제도는 無意味한 것이다. 즉, 올바른 가치관 또는 참다운 가치관이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諸領域에 걸쳐서 私益과 公益을 조화롭게 胚胎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조화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국민과 정부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노사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즉 모든 사람과 사람사이에 믿음의 紐帶가 없이는 목표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 만연된 不信風潮를 배격하고 신뢰하는 사회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직이라는 道德律을 준수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입각한 행동이 要求되며, 사회는 개인의 양심적인 행동이 陽性化될 수 있도록 公正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國家目標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合理的이고 合憲的인 正當性의 구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가. 個人良心의 회복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개인이다. 마치 原子의 존재를 認定하지 않고서는 物體를 생각할 수 없듯이 個人的 存在를 認定하지 않고서는 사회와 국가의 存立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淨化라는 범국민적인 精神改革運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가장 根本的인 個體인 개개인의 윤리도덕적인 자각이 先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양심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良心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양심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며 동시에 事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能力을 말한다.

양심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있는 선한 本能이며 이 세상을 平和와 福樂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공통된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서 社會的인 문제가 惹起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제각기 행동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굴절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개개인이 가진 양심의 尺度가 항상 일치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생김생김이 千態萬象이듯이 모든 사람이 양심을 헤아리는 價値基準도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個人的 양심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社會적인 안목에서 定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正直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良心'이 아닌 '너와 나의 良心의 調和'라는 양심의 社會性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이란 개인의 自覺과 사회의 公益을 조화시키는 마음가짐이며 이에 입각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合法的인 범위내에서 개인의 자각과 사회적 공익성이 正面으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때에는 민주적인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는 국민 모두가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 고안된 가장 유용한 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경직된 制度가 아니며 유연성 있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合意의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私益이 지나치게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公益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調和롭게 適正線을 찾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市民이란 각자의 創意性과 自律性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義務와 責任을 다하는 성숙된 개인인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양심이 私益과 公益사이에서 조화로운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個人主義에로 沒落하고 말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價値觀의 混亂으로 나타난 우리의 과거를 되새겨 볼 때, 개개인들이 지나치게 自己中心的이고, 공익성이 결여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양심이란 개인의 공익을 의식하면서 스스로의 衷情어린 믿음에 호소해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所信 혹은 信念인만큼,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양심적인 행동을 實踐함에 있어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精神을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보다 성숙된 民主市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社會淨化運動이 진정한 社會改革運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公正한 社會制度的 확립

사회를 구성하는 個個成員들의 행동이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자연히 그 사회는 도덕적 기반이 다져져서 公正한 社會적 메카니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

고 낙관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良心에 입각하여 행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倫理·道德的인 자각만으로는 不充分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集團的인 連帶體系인 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사회제도 및 사회적 풍토, 관례, 관습 등이 개인의 양심적인 行爲를 포용력 있게 受諾하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킨다면 양심이 제대로 발붙일 곳을 잃어 버리고 말 것이다. 즉 사회의 연대체계가 公正性을 갖지 않으면 양심적인 개인들 사이에 참다운 유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公正한 社會制度는 양심적인 개인들이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사회의 諸關係속에 公正성을 정립, 실현시켜 公正體系를 確立함으로써 그 속에서 개인이 마음껏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公正體系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정체제란 사회적 諸關係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衡平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제관계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사이의 모든 관계를 말하며, 道德的 衡平이란 누구에게나 정당한 公正性,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公平性,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公益性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공정체제란 국민들 서로간에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정직한 社會風土에 대한 굳건한 믿음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血緣, 地緣, 學緣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人間關係가 의식구조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能力을 위주로한 全體的이고 大義的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人脈을 重視하는 지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발전에 치중하여, 分派的이고 배타적인 사회풍조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公正性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不正行爲가 適用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돈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다는 黃金萬能主義的인 생각들이 만연되어 사회적 公正성이 沮害당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公正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단순한 理想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既存하는 사회제도와 풍토, 그리고 관례와 관습 등이 公正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公正성이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公正性, 公平

性, 公益性 등의 개념이 사회적 평등에 입각하여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칫 個人的 自由라는 높은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적 자유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道德的 衡平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적절한 조화야말로 바로 民主市民精神의 力量을 평가하는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 國家의 正當性 具現

국가는 개인의 自我實現을 위한 수단이며 국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全構成員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적합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용되는 그 사회의 최종적인 公正管理體制이다.

국가는 對外的으로는 독립을 수호하고 主權을 확립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信任을 획득·유지해야 하며 對內的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諸領域에 걸친 국가발전목표를 성실히 수행, 국민의 福利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또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民族의 正統性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理想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의 正當性이란 곧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의 現實的 理想과 指標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수행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의 일부가 國家權力으로 위임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지만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나라와 民族의 正統性이란 5천년민족사를 올바르게 保存, 存續시키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현실적 이념과 지표는 바로 民主, 福祉, 正義 社會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입각한 國民精神이 밑받침되어야 하고, 법이나 제도와 같은 政治體制維持 수단은 公正性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正直을 바탕으로 信賴하는 社會를 建設할 수 있을 것이다.

#### 2. 秩 序

우리 사회의 價値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요청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秩序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體質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는 모든 존재의 基本法則이며 창조의 바탕이 되는 원리이다. 미세한 원자의 운동에서부터 우주의 生成消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현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인

간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文明을 이룩하고 세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自然法則을 파괴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順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데서 可能한 것이다. 東西古今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진 사회는 사회적인 諸要素間の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사회이며, 이처럼 조화되고 안정된 사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지 自然은 있는 그대로의 秩序에 따라 움직이는데 비해 人間社會의 질서는 합의에 의해 창조된 질서라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사회의 질서는 자연적 질서의 論理에 바탕을 둔 창조적 질서라야 할 것이다.

創造的 秩序란 구성원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질서라는 말이다.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自然法則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낸 질서가 바로 創造的 秩序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질서가 내가 만드는 것이기도 한다. 는

각 個人이 인간사회의 秩序를 만든다는 말은 개 개인이 다 제멋대로 어떤 규칙이나 행동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人間社會의 秩序는 어디까지나 여러 사람과의 相互關係속에서 약속되어진 合意된 규칙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맺어져 있는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려는 個人의 노력과 행동이 없이는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創造的 秩序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秩序概念에 입각한 행동이 지속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첫째, 位置秩序로서 이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役割秩序로서 이것은 하여야 할 것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關係秩序로서 이것은 맺어야 할 것을 맺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 모두가 때와 장소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여야 할 것을 하며, 맺어야 할 것을 맺을 때 사회의 秩序는 가장 잘 유지되며, 國民道義는 전반적으로 잘 확립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질서, 역할질서, 관계질서는 무엇에 基準해서 판단되어지는가? 이는 개인의 양심을 기초로 하여 실행되고, 公正한 社會規範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정의에 기초를 둔 法精神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正氣의 이념과 秩序의 이념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

을 가지며 相互補完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가. 位置秩序

위치질서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自然의 질서라는 것은 자연을 형성하는 개개의 構成要素들이 狀況的 與件과 결부되어 정연한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질서는 붕괴된다. 그러므로 事物도 자연질서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物的 秩序가 成立되며,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道德的 平衡에 입각한 사회질서가 성립된다.

位置秩序란 곧 社會倫理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의 존재윤리는 존재되는 윤리가 아니라 존재하는 윤리이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位置를 얻게 되는 자발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개의 個人이 위치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自然처럼 숙명적으로 혹은 決定論的으로 한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狀況變化에 따라 스스로의 지위와 양심과 사회적 기대에 副應하여 스스로의 適材適所를 항상 확인하고 그 곳에 존재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位置秩序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가?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첫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地位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집단에든지 소속됨으로써 스스로 社會的 存在가 됨을 자각한다. 즉 집단에 소속되는 개개인에게는 그 집단속에서의 各者の 相對的인 지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既存의 지위에 대해서 구성인들은 대개 그 지위에 合當한 사람이 그 지위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곧 社會的 期待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사회적 현실은 합당한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 발탁되거나 머무르기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非正常的인 방법을 통하여 지위를 획득하거나 부여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社會가 질서있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明白한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곧 不法으로 지위를 획득하거나 情實人事를 통해서 지위가 부여될 때 사람들간의 위치질서는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적합한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과 사회가 最大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能力優先의 公正한 人選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뒷받침으로서 개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自己省察과 人事行政에 있어서의 위치질서를 흐트리

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社會는 法, 道德, 規範 등의 사회적 통제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行爲領域을 규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공자를 享有할 자유를 가지지만 법, 도덕, 규범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制限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개개인의 生活을 침해하는 제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位置秩序를 確立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하나의 方便인 것이다. 따라서 법, 도덕, 규범 등은 질서를 維持하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理致이다.

그렇다면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우선 法이 許容하지 않는 장소에 침입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면 不法集會나 立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혹은 횡단보도의 不法通過라든가 통행금지가 發効될 때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등은 位置秩序를 沮害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許容되지 않는 자리잡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制裁는 없다하더라도 容認되기 어려운 장소에 있음으로써 위치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公衆秩序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줄서기를 위반하고 새치기를 한다든가, 소위 急行料를 지급함으로써 타당한 질차를 흐트러 놓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정도에 合當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도에 합당한 행위란 주로 經濟的인 位置概念으로 분수에 맞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현재의 自己收入이 支出範圍를 어느정도 결정짓게 마련이다. 따라서 心理的, 情緒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維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우리 社會에는 자신의 분수를 忘却하고 體面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나친 消費支出이나 虎禮虎飾을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지출이 수입을 앞서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收支均衡이 깨어질 경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欲求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욕망이 사회속에 普遍化되고 뿌리깊게 내릴 때 사회에는 便法이 만연하게 되고 질서에 교란이 생기게 된다. 이는 또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지나친 소비행위에서도

유래 된다. 高所得者의 지나친 消費性向은 저소득자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게 되거나 상대적인 剝奪感을 야기시켜 사회전체의 結束力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경제행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社會란 모든 사람들이 共存共生 하는 공동체인만큼 '나 혼자만의 지출'이 아닌 '남을 의식하고 있는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에 합당한 행위란 '個別的인 合當'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調和된 合當'의 정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位置秩序를 살펴본 것이다. 다음에는 인간과 環境을 맺게되는 自然과의 질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生活의 편리를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事物을 이용하게 되고 다루게 된다. 이 때 對象이 되는 사물에는 自然物, 人工物, 放出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물이나 인공물, 방출물 등을 이용하고 취급함에 있어서도 整然한 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러한 질서를 위반하게 될 때 社會的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

첫째, 자연물이란 바로 自然環境을 말한다. 자연환경을 인간에게 有益하도록 적절하게 보호하고 일구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둘째, 人工物이란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事物을 말한다. 즉 모든 건축물과 생산시설, 생산품 등을 총망라한 人爲的인 加工物로서 그러한 사물들이 만들어져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히 위치하지 않으면 또한 질서의 破壞要因이 된다. 예를 들자면 도심지역의 공장지대나 道路交通法을 위반한 차량 등은 위치질서를 흐트러 놓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放出物이란 일단 使用過程을 거쳐 廢棄되었던 사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버려지는 데에도 적절하게 造作된 통로를 통한 질서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放出物의 질서있는 폐기가 요청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現代産業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그 많은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질 경우 자연환경의 汚染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化學處理가 되지 않은 공장의 폐수나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은 알게 모르게 大自然의 秩序를 하나 하나 붕괴

시커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役割秩序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형무형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어지거나 成就된 지위에는 언제나 社會的 期待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주로 社會의 規範에 의해서 정해진다. 政治家는 정치가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의사는 의사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며, 부모는 부모로서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社會적으로 期待되는 役割이 있는 법이다. 즉 役割秩序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상태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各者가 하여야 할 일을 도에 넘치게 한다거나 게을리 했을 때는 어딘가에 異常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異常現象이 社會적으로는 秩序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자의 역할은 각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役割과 相互補完的으로 관계된다. 즉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맞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個人들 間에 合意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合意가 있음으로 해서 社會에는 질서가 유지된다. 그런 데 日常生活속에서 서로의 기대하는 바가 항상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期待가 서로 相衡될 때 그리고 상충된 기대를 조절할 수 없을 때 갈등과 긴장이 誘發되므로 이의 원만한 해소를 위하여 忍耐와 說得, 그리고 感情移入的 理解의 필요성이 提起된다.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각자의 行動에 충실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상충되는 역할의 기대를 조절하기 위해 對話를 통하여 合意에 이르거나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努力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하여야 할 것을 하는 精神으로서의 役割秩序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지고 실천해 나가는 정신과 相通하므로 곧 責任倫理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정신으로서 이는 또한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지나친 出世主義나 權力志向의 경향도 役割倫理의 결여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役割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없을 때, 즉 役割秩序가 붕괴될 때 社會에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무질서가 야기된다. 社會不條理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역할을 남용하는 경우, 역할을 경시하

는 경우, 그리고 역할을 拋棄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역할의 濫用이란 주로 權力型不條理 또는 官僚型不條理 등과 같이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不當行爲를 말한다. 법관이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판결을 한다거나 고급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裁量權을 남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비리, 기업주가 부당하게 고용자를 해고하는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할 것이다.

둘째, 役割의 경시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責任이나 義務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땅히 納稅義務가 있는 데도 탈세를 한다거나, 병역을 기피한다든가, 企業倫理를 저버리고 불량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責任을 다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또한 現代産業社會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職業倫理의 함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役割의 포기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함으로써 社會 전체 질서에 惡影響을 끼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범죄를 목격하고도 이를 申告·告發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덕한 행위를 보고도 무관심하게 傍觀하는 경우 등은 시민 스스로가 주변의 秩序破壞行爲를 묵인함으로써 어느 면에서는 질서 파괴를 조장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곧 役割에 대한 責任과 努力을 다함으로써 役割秩序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관계와 개인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다. 關係秩序

인간은 누구나 고립하여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을 社會的 存在라고 말하며 실제로 모든 인간은 社會의 相互作用의인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위치에 있게 될 때에 우선 그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自己自身の 위치를 인식하여 이에 따라 주어진 社會規範에 의거해서 行動을 하게 된다. 또한 相對方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의 기반위에서 行動의 주고 받음에 참여함으로써 人間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에는 血緣, 地緣 등 태어남으로써 주어지는 一次的인 關係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二次的인 관계가 있고, 부자관계나 사제관계 처

럼 上下關係가 있는가 하면, 동료관계처럼 水平的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다. 또한 좁은 범위로 가족관계가 있는가 하면, 넓은 범위의 공중관계나 국제관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協同關係가 있는가 하면 葛藤關係가 있을 수 있다. 내용별로는 통치관계와 같이 政治的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交換行爲를 中心으로 한 經濟的인 관계가 있고, 會社, 官公署와 같은 公式的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남녀간이나 친구간에서 볼 수 있는 非公式的인 관계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關係를 상정하는 것이며, 行動하는 것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관계의 물결을 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바야흐로 關係와 그물이며 關係짜임이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自己本位의 관계를 설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諸般關係에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관계 즉 合理的이고 效果的이며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곧 관계질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關係秩序란 맺어야 할 것을 맺는 狀態를 말하는데, 주어진 關係 즉 일차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人間은 선택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한다. 그러한 선택적인 관계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社會에도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고,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할지라도 社會에는 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社會와 國家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사회구성원간의 합리적인 관계의 형성은 協同的인 關係로 발전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社會의 단결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질서란 바로 協同倫理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는 주로 血緣, 地緣, 學緣 등 전근대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우리集團(we-group) 意識을 형성하여

부분적으로는 강하게 뭉치지만, 우리집단과는 다른 그들集團(they-group)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關係는 국민전체의 統合을 저해하는 것이 되며 우리 社會에 널리 보편화되기를 기대하는 汎國民的인 市民倫理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다.

정치집단간에 있어서 맹목적인 대립관계가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고, 民官關係가 利權請託으로 타락되어 있거나, 혹은 전통적인 관준민비 사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도 時代의 要求에 맞지 않는 관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자·소비자 관계, 노사관계, 매매관계에서 국민다수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도외시한 악덕기업인, 악덕상인, 또는 극한적 투쟁에 호소하는 일부 근로자 등이 관계질서를 해친다고 보며, 社會的으로는 公衆道德을 지키기 않음으로 해서 公共倫理의 참뜻이 제대로 國民生活의 밑바닥에 자리잡지 못하여 공중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教育에 있어서도 과거의 그 엄격했던 사제관계가 송두리채 흔들려 현재의 사제관계를 빗대어 “先生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學生은 있어도 弟子는 없다”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례만으로 우리 社會의 關係秩序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새시대의 새 물결 속에 새 歷史를 창조해 나가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國民 모두가 우리들 사이의 관계질서를 깊이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서로 맺어지는 關係가 참다운 것이 되지 못할 때 社會的 秩序는 붕괴되는 것이다. 바로 關係秩序의 악화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서로 타협될 수 없는 갈등이 커지면 社會는 不安과 激動의 와중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各者는 關係秩序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금까지 자기본위로 습성화된 행동양식을 버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意識함으로써 市民精神에 입각한 協同精神이 이 社會에 충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 \* \*